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58
----------	------

2025년 12월 1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17일, 허 훈 의원(찬성자:14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허 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 유괴 및 유인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 1,084건 중 60% 넘는 사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시장이 현행 조례 제4조1)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보다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조의2(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어린이들은 사회 공동체의 기초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기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하기에,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2)에 따라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어린이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책무가 있음.
- 본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시장이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특히, 안 제5조의2 각 호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인 성폭력, 아동학대, 실종 및 유괴, 약물 오·남용,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교통안전 등은 일단 발생하면 어린이의 신체 또는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요소로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시는 이미 매년 수립하는 ‘서울시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통해 교통안전, 식중독 예방, 재난대비 등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

2)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5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17일
발 의 자: 허 훈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서상열, 심미경,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원형,
이종환, 홍국표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아동 유괴 및 유인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 1,084건 중 60% 넘는 사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조의2(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 교통안전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어린이 안전교육) 시장</u> <u>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u> <u>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u> <u>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u> <u>협의하여야 한다.</u> <u>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u> <u>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u> <u>3.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u> <u>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u> <u>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u> <u>5. 교통안전 교육</u> <u>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u> <u>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u>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제5조의2(어린이 안전교육) 각 호와 관련하여 소관부서¹⁾서 해당 교육을 기시행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단, 참고자료로 시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안전 관련 교육 세부 현황자료를 첨부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현황(소관부서, 교육명, 근거자료)

소관부서	교육명	근거자료
아동담당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2025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계획(아동담당관-981, '25. 1. 3.)
아동담당관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 2025년 실종아동 업무현황 및 개선계획(아동담당관-8337, '25. 4. 9.)
재난안전예방과		- 어린이 유괴 예방 집중 캠페인 추진 협조요청(재난안전예방과-13673, '25. 9. 22)
보건의료정책과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 2025년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934, '25. 1. 9.)
재난안전예방과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025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재난안전예방과-11432 '25. 8. 7)
	교통안전 교육	

[붙임]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 관련 교육 세부 현황자료(순서: 학대 예방, 실종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재난·교통안전)

출처 : 2025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계획(아동담당관-981, '25. 1. 3.)

III 2025년 사업 계획

□ 주요 변경사항

2024년		2025년	
사업 대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인권전문가, 시민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복지기관 종사자, 시민 강화	
추진 내용	· 아동학대 공동대응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강화 교육	
	- 대상별·연차별 맞춤형교육 운영	· 대상별·연차별 맞춤형교육 운영 지속	
	- 직무연계 현장중심 실천교육 운영	· 대상자 욕구중심 직무연계 현장 실천교육 운영 지속	
	· 교육 콘텐츠 개발	· 교육 콘텐츠 개발·개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화교육 과정 신설 (아동인권감수성 교육 포함)	· 법정 의무교육 콘텐츠 신규제작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모의실습훈련 (영유아 아동학대사례)과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모의실습훈련(청 소년, 영유아 아동학대사례)개선 강화	
	·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 홍보	·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 홍보	
	- 아동권리증진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의날행사, 캠페인 등 추진	· 아동학대예방 인식개선, 아동학대신고율 향상 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의날 행사, 홍보활동 등 추진 지속	

□ 세부 추진계획

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선

○ 법정 의무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2종 콘텐츠 개발	
	-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과정 개발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2시간) 과정 개발 - 제작 시기: 1분기 내	
개발 구성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정의, 개념, 법령) - (아동학대 유형 및 통계)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외 추가 내용] - (관련 법령) - (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안내)

출처 : 2025년 실종아동 업무현황 및 개선계획(아동담당관-8337, '25. 4. 9.)

④ 실종아동 예방 교육 콘텐츠 배부 및 홍보

○ 실종예방 교육 콘텐츠(영상물), 포스터, 리플렛 등 배부

- 부모, 유아, 아동, 청소년 등 연령별 맞춤형 동영상 기 제작(아동권리보장원)
- 서울시 보육포털, 몽땅정보만능키,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게시 협조
-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콘텐츠 배부 및 상영
- 실종예방 포스터, 실종 발생 시 행동요령 리플렛 등 배부 및 온라인 광고

< 대상자 별 홍보 동영상 >

			
교육 영상물(부모용)	교육 영상물(유아용)	교육 영상물(어린이용)	교육 영상물(청소년용)

< 포스터 및 리플렛 >

출처 : 2025년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934, '25. 1. 9.)

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비전	의약품 안전사용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추진 전략	① 생애주기별 차별화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으로 교육 효과 증대 ② 신뢰도 높은 의약품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③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 강화		
분야	대상자별 맞춤형 약물교육	대시민 홍보 강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
실행 과제	·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미취학 초등학생, 중장년, 어르신 · 취약계층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신뢰성 높은 정보 신속 공유 · 의약품 안전성 및 회수 등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시약사회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출처 : 2025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재난안전예방과-11452, '25. 8. 7.)

붙임

[서울시] '25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과제카드

과제번호	과제명
합 계	총 17건
1-1-1	안전하고 편리한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
1-1-4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설치 확대
1-2-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1-2-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위반행위 단속
1-3-2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2-3-3	어린이제품 안전검사 지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3-1-특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3-2-특화	어린이 식중독 저감화 지속 추진, 스마트한 급식관리
3-2-5	식중독 신속대응 및 원인분석을 통한 확산·재발 방지
3-2-6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3-3-특화	안전한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4-2-5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5-2-1	어린이 유원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2-3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안전사고 예방 활동
5-2-특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6-1-2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서비스 확대
6-2-특화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콘텐츠 개발